

**[함양군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용역]
협약서**

2023. 12. .



함 양 군

(주)이산 외 1개사

[함양군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용역] 협약서

함양군수(이하 “관리청” 이라 한다)와 주식회사 이산(대표이사 이원찬), 한중산업개발(주)(대표 임남재)(이하 “관리대행업자” 라 한다)는 함양군 공공하수처리시설(이하 “처리시설” 이라 한다)의 운영관리 업무를 각각 관리대행하기로 협의하고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협약목적) 이 협약은 처리시설을 효율적·경제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관리청” 이 처리시설의 운영관리 업무를 “관리대행업자” 에게 관리대행 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리대행대상 재산의 명세) 운영관리 대행대상 재산의 명세는 “관리청” 과 “관리대행업자” 가 협의·작성하는 인계·인수서에서 정하는 바와 같다.

제3조(관리대행의 내용 및 처리방법) 이 협약에 의한 『관리대행업무의 내용 및 처리방법』은 “관리청” 이 별도로 정한다.

제4조(관리대행기간 및 협약변경) ① 관리대행 개시일은 2024년 1월 1일로 한다.

② 관리대행 기간은 계약체결 후 관리대행 개시일로부터 3년으로 하고, 대행성과 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5년의 범위에서 이를 갱신할 수 있다.

③ 협약기간 연장 또는 해당 처리시설의 용량증감, 관리대행 시설을 추가하는 등으로 협약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는 “관리청” 과 “관리대행업자” 가 협의하여 변경한다.

제5조(대행관리비) ① 처리시설의 운영관리 대행에 따른 비용(이하 “대행관

리비”라 한다)은 연간 3,467,989,000원으로 하고 비목별 내역은 별표 1과 같다.

② 계약기간의 연장, 처리시설의 추가, 시설용량 또는 처리방식의 변경, 유입유량의 증가 등 당초 관리대행비용 산정 시와 운영여건의 변동으로 관리대행비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리청”과 “관리대행업자”가 협의하여 비용에 반영한다.

제6조(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제5조에 의한 대행관리비 중 인건비목은 매년 공무원 임금 인상율을 적용하여 조정한다.

② 경비목의 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여 생산자물가지수변동율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물가지수 적용 기준일은 입찰일로 하고, 기준금액은 계약금액으로 하며, 조정시점은 조정신청 직전월의 물가지수를 적용하여 산정한다.

제7조(대행관리비 부담 등) ① 관리대행업무 수행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관리대행업자”가 부담하되, 다음 각 호의 비용은 “관리청”이 부담한다.

1. 관리대행한 재산의 가치를 증진시키거나 내용연수를 증가시키는 시설공사 또는 개·보수공사와 단위건당 금액이 3백만원 이상인 수리수선비
2. 비품, 차집관로 점검용 차량, 장비 등 고정자산의 취득
3. 천재지변에 의한 긴급한 시설보완 및 피해복구에 소요되는 비용
4. 화재 및 풍수해보험
5.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안전점검과 기타 관계법령에 의한 외부기관의 기술진단 및 정밀안전진단 등에 소요되는 비용
6. 관리대행시설에 대하여 부과될 수 있는 조세, 지방세 등 각종 세금
7. 기타 “관리청”이 인정하는 비용

② “관리대행업자”는 제1항에 정한 사유가 발생될 때에는 목적, 용도, 예상금액, 집행시기, 기타 필요한 사항을 서면으로 “관리청”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③ “관리청”은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공사 등을 “관리대행업자”

에게 대행하게 하여 집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대행업자”는 “관리청”과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건수가 많아 행정력 낭비가 우려될 때는 “관리청”의 승인을 받아 수행할 수 있다.

④ 기계장치 및 시설물 등은 “관리대행업자”가 책임지고 보수, 유지, 관리하여 내구연한까지 사용하여야 하며, 내구연한이 경과하더라도 사용 가능하면 계속 사용하도록 하고, 더 이상 사용이 불가능 할 때에는 “관리청”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계약보증금) 본 협약의 이행을 위하여 “관리대행업자”는 계약보증금으로 연간 대행금액의 100분의 10이상에 상당하는 현금 또는 현금에 갈음하는 계약보증증권을 “관리청”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9조(재대행의 금지) “관리대행업자”는 관리대행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없다.

제10조(법령 등의 준수) “관리대행업자”는 관리대행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공하수도시설의 운영관리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관리청”이 별도로 정하는 『함양군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업무의 내용 및 처리방법』에 따라야 한다.

제11조(업무의 적정관리) ① “관리대행업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관리청”과 협조하여 업무수행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② “관리대행업자”는 처리시설을 24시간 연속 가동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가동을 일시 또는 장기간 중지할 경우에는 “관리청”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③ “관리대행업자”는 관계법령 등이 정하는 기준이상의 자격을 소지한 인력을 임용·배치하여야 하며, 공공하수도시설의 운영관리방법 및 투입인력에 대하여는 처리시설이 최적의 상태로 운영·관리될 수 있도록 “관리대

행업자”가 적정하게 운영·관리하여야 한다.

④ “관리대행업자”는 운영인력의 퇴사 및 그 밖의 사유로 1개월 이상 결원이 발생한 경우 인건비를 “관리청”과 협의하여 정산할 수 있다.

제12조(수질관리) ① “관리대행업자”는 방류수 수질이 하수도법시행규칙 규정에 의한 방류수 수질기준 이내로 처리되도록 운영관리 하여야 한다.

② “관리대행업자”는 처리수질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할 때는 그 사유 및 원인을 규명하여 지체 없이 “관리청”에게 보고하고 개선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관리대행업자”는 “관리대행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한 경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다만, 천재지변 등에 의한 수질기준 초과 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시설설비 등의 관리) “관리대행업자”는 처리시설에 설치된 시설, 설비, 비품 등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관리대행기간이 만료되었거나 협약이 해지되었을 때는 즉시 “관리청”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제13조의1(안전·보건 확보) ① “관리청”은 관리대행 업무수행과 관련 있는 종사자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하여 “관리대행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관리대행업자”는 “관리대행업자”의 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 확보를 위하여 제반사항을 철저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14조(사고보고) “관리대행업자”는 관리대행업무와 관련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관리청”에게 보고하고 “관리청”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관리대행재산에 변동사항이 있을 때에도 또한 같다.

제15조(실적보고 및 확인) ① “관리대행업자”는 매월 관리대행업무의 처

리성과를 관련규정 또는 “관리청” 이 정하는 방법·절차에 따라 “관리청”에게 보고하고 확인받아야 한다.

② “관리청”은 관리대행업무의 처리성과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관리대행업자”와 협의하여 조사할 수 있다.

제16조(관리대행성과서 제출) ① “관리대행업자”는 성과평가 대상기간 만료일 경과 후 30일 이내에 관리대행성과서를 작성하여 “관리청”과 성과평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재계약 도래시에는 계약만료 90일 이전에 관리대행성과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② “관리대행업자”는 계약만료 도래 시에는 계약만료 90일 이전에 관리대행성과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③ “관리청”은 성과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계약 갱신 또는 입찰 여부를 결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만료 150일 이전에 대행성과서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관리대행업자”는 요청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관리대행성과서를 작성하여 “관리청”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관리대행업자”는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계약만료 이전에 성과서를 제출하고 남은 계약기간을 포함한 관리대행성과서를 별도 작성하여 계약만료 후 30일 이내에 “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대행관리비의 청구 및 지급) ① 대행관리비는 연간 총대행관리비를 월 단위로 배분하여 “관리대행업자”의 청구에 의하여 “관리청”은 실 청구일로부터 7일 이내에 “관리대행업자”에게 지급한다. 이때, 세금계산서 발행 시 발행일은 실제의 청구일과 관계없이 매월 말일로 한다.

② “관리청”의 사정으로 대행관리비 지급이 지연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지연에 대한 이자를 지급한다.

③ “관리대행업자”는 매회계년도 경과 후 2월 이내에 관리대행 업무에 대한 결산서를 작성하여 “관리청”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의2(인센티브 지급) ① 연간 처리시설 운영결과 정산비목에 대하여 계약금액 대비 운영비용을 절감한 경우 “관리청”은 절감액의 일부를 “관리대행업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② 운영비용 절감액 산정방법은 환경부 고시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 선정 및 대행성과평가」 [별표 3]에 따른다.

제18조(기밀유지) “관리대행업자”는 관리대행업무 처리과정에서 얻은 기밀을 “관리청”의 허락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제19조(민·형사상의 책임) “관리대행업자”는 관리대행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관리대행업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제20조(협약의 해지) ① “관리대행업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관리청”은 이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관리대행업자”가 관리대행 업무를 인수하지 않을 때
2. “관리대행업자”가 관계법령 및 본 협약을 이행하지 않을 때

② “관리청”은 제1항 각호의 규정 외에 공익상 필요가 있을 때에는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청”은 해지하려는 날로부터 6개월 전까지 “관리대행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관리대행업자”는 “관리청”의 명백한 귀책사유로 인하여 협약이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21조(손해배상) ①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협약이 해지될 때에는 계약보증금은 “관리청”에게 귀속된다.

② 제20조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협약의 해지로 “관리대행업자”에게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관리청”은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③ “관리대행업자”는 “관리대행업자”의 명백한 귀책사유로 관리대행업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관리청”에게 손해를 입힌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에 대한 배상금액은 “관리청” 과 “관리대행업자” 가 협의하여 정한다.

⑤ 관리대행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때에는 “관리대행업자” 의 부담으로 배상한다. 다만, 그 손해의 발생이 “관리청” 의 책임으로 인한 경우에는 “관리청” 이 부담한다.

제22조(관할법원) 이 협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소송의 관할법원은 “관리청” 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각급법원으로 한다.

제23조(협약에 정하지 않는 사항) 이 협약에서 정하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3통을 작성하여 “관리청” 과 “관리대행업자” 가 서로 기명날인하여 각각 1통씩 보관한다.

2023년 12월 14일

“관 리 청”

함 양 군 수 진 병 영



“관리대행업자”

주 식 회 사 이 산 이 원 찬



한 종 산 업 개 발 (주) 임 남 제

